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0 선고 2019가단519168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4. 29.

판결 선고2020. 6. 10.

주 문

1. 피고는,

가. 원고에게 47,203,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8. 1.부터 2019. 8. 3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11. 13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1)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신영

별지

1) 공동피고 C공사에 대한 소는 2020. 3. 17.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음.